# 개원 준비와 사무장병원 문제점



이 **일 근** 서울브레인신경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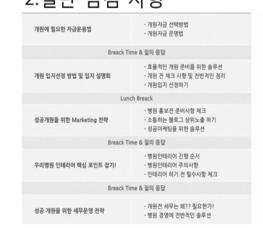
### 개원 준비 점검 사항

- 1.개원 목적
- 2.일반 점검 사항
- 3.간과하는 사항들

### 1.개원 목적

- 경제적 이유, 목표 설정
- 직업윤리 구현 (환자, 질병,...)
- 사회적 기여(의료, 사업, 사회정의,...)

## 2.일반 점검 사항



### 3.간과하는 사항들

- 급여, 비급여 구성 및 장단점
- 재정계획 및 점검
- 직원 관리, 노무 관리
- 이전 및 폐업 비용

"성형외과는 이미 포화상태 아닙니까? 성형할 만한 사람은 이미 다 했고 큰 돈 들여 개원했는데 돈은 안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뼈에 손대고 양악수술, 유방확대술, 안면거상술 등 고가 수술 아닙니까? 심지어 중국인 브로커한테까지 휘둘리고요. 정말문만 열었다 하면 환자가 우르르 몰려오는 질병 치료를 하고 싶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라면 환자가 꾸준히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성형외과가 최고였는데 아무래도 전공잘못 선택했나봐요." (A성형외과 원장)

"요즘 환자가 뚝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더 아찔합니다. 대학병원은 한꺼번에 몇 달씩 처방을 내고동네의원으로 절대 보내지 않는 구조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격모니터링에 수가 산정한다고 나오지않았습니까? 원격모니터링이 되면 빅5병원에서 앞다퉈 실시할 것이고, 결국 몇 달씩 처방을 하면서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게 하겠죠. 아마 개원가는 다 도산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과, 가정의학과는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비급여과가 부럽습니다."(B내과 원장)

"저희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보게 돼요. 환자 진료를 해주면 보람이 있고 감사인사도 받지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고객 만족과의 사투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상담해야 합니다. 불만고객이라도 생기면 어떤가요? 요즘은 불만고객이 아니라진상고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돌면서 의료쇼핑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돈을 환불받지요.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사회 문제가 많아진 탓인지 정말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듭니다. 보람있는 환자 진료를 하고 싶어요."(C피부과 원장)

"재활의학과가 몸값이 높다고요? 지금 순간은 그렇겠지요. 지방에 요양병원이 늘어났고,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의사의 가산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 요양병원 병상도 포화상태이고 정부는 어떻게든 병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활의학과도 같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활병원을 세우기에는 재활수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 제대로 된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병원이 아니라 스포츠센터나 열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인기도 지금 반짝이에요."(D요양병원 원장)

#### 경영 평가 지표

- 일간, 월간 진료 수익
- 일간, 월간 진료 비용
- 개원 비용
- 이자 비용 가산
- 원장 기회비용을 진료 비용에 산정

### 3.간과하는 사항들

- 급여, 비급여 구성 및 장단점
- 재정계획 및 점검
- 직원 관리, 노무 관리
- 이전 및 폐업 비용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환자를 등 재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타낸 병원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모 요양병원 행정이사 안 모(44·여)씨를 구속하고, 의사 이 모(71·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보조금 등 총 14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이 씨는 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환자기록부에 입원환자와 다른 이름을 올리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환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무장 병.의원 유형>

#### [사례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 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 [사례3] 의료생협이 명의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 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줄자금액, 그 밖에 인 가의 기준 절차 등 위반

#### <사무장 병.의원의 일반적인 구별방법>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 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 . 환자 진료비 감면
- . 정기적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둘째, "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료업은 반듯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해야 한다."

<u>셋째,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의료법인</u>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만 가능하다."

이 때, 의사를 제외한 <국가, 공공기관, 의료법인 등>은 모두 국가기관이거나 법인이며, 이들 법인 등은 의사가 아닌 일반 인도 설립 가능하므로, <u>자연인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의사>만 유일하다</u>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연인으로써는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한 것을 통상 <**개설 독점권>**이라고 부른다.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반인 등이 병의원을 차리고, 개설권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개설 신고를하게 하고, 진료하도록 하여, 소득을 나누거나, 의사에게 월급을 주는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원래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병의원 내의 사무 업무, 즉 원무 행정, 보험 청구 등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들 중 자신의 재산 혹은 남에게 빌리거나 투자 받은 돈으로 병의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흔히 일반인이 차린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통칭하는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그 사실이 발각되면, 개설자인 의사는 그가 근무했던 기간의 청구 금액을 모두 환수 당하고, 병원은 업무 정지, 의사 본인은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원 급여, 세금 등의 관공서 비용, 임대료등 각종 지출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사무장은 자신이 의료 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고 금전적 책임도 대부분 직접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부당하다고 하여, 사무장도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